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2-10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	2015도11610 업무상과실치사, 업무상과실치상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, 공용서류손상
피 고 인	A
상 고 인	피고인 및 검사
변 호 인	변호사 B
원 심 판 결	광주고등법원 2015. 7. 14. 선고 2015노177 판결
판 결 선 고	2015. 11. 27.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1.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

가.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유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



해양조난사고시 구조 활동에 투입된 해경 등 구조업무 담당자의 구조 활동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, 해경 등이 구조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훈련내용,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정한 행동수칙, 구조 환경 및 조건, 사고의 경위와 특성, 상황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, 피고인에게 ① 2014. 4. 16. 09:30경 I이 J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'J와의 교신 유지, 상황 파악, 승조원 임무 배치 등에 대한 조치'를 소홀히 한 과실, ② 위 09:30경 이후 'J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', 'I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', 'I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 유도'의 각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.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.

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, 피고인에게 'I 승조원 등에 의한 J 방송장비 이용 승객 퇴선 유도', '헬기 인명구조사에 의한 승객 퇴선 유도', '2014. 4. 16. 09:51경 이후 마이크 또는 육성을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'의 각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불이행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.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.

나. 인과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



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,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.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.

다.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

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"피고인에게는 J의 선장 및 선원, K의 임직원, 고박업체의 직원 및 운항관리자 등과 사이에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"는 등의 이유로,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. 거기에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.

2.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

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. 거기에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